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Q & A

Question	Answer
○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점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의료법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매 3년마다 한번씩 자신의 진료실태 등을 복지부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면허신고를 하는데 있어 동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면허신고를 하는 전년도까지의 이수여부입니다.
○ 보수교육 점수는 1년에 몇 점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 의료법 상에는 모든 의료인은 1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보수교육의 운영방식은 의료법에 의거 각 직종의 협회 중앙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현재 교육시간과 점수 1:1을 기본으로 하는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지침서에 명시된 보수교육종류별 기관 년상한 평점표를 기준으로 합당한 교육일 경우 해당되는 보수교육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논문게재나 국제학술대회 참석의 경우는 시간과 관계없이 근거자료와 함께 이메일 접수로 신청하시면 해당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보수교육이 미이수되면 이수한 점수는 이월되지 않고 미이수로 분류된 후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로 8점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 면허신고 일괄신고기간(2012. 4.29~2013. 4.28)에는 몇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되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 2012. 4.28 이전 면허 취득자는 일괄신고기간에 면허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일괄신고 기간에는 2011년도의 보수교육 점수가 이수되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며, 2013. 1. 2일자로 협회로 접수된 복지부의 지침 개정에 의거, 2011년도 미이수자는 일괄신고기간(2012. 4.29~2013. 4.28)내에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하고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과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신 분들은 2013. 4.28일까지 8점을 이수하신 후 면허신고가 가능하며, 기본 원칙에 의거 2012년도와 2013년도 보수교육은 이와 별도로 이수하여 차기 신고에 이상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일정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 협회에서는 전체 치과의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수교육 계획 목록'을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메인화면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바로가기와 연결하여 공지하고 있으며, 협회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경우 로그인 없이 메인화면 우측하단의 '보수교육계획 목록'을 클릭하시고 새로운 창이 뜨면 년도와 월을 원하시는 시점으로 변경하시어 해당 월의 전체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Answer
	<p>특히 홈페이지의 '보수교육계획 목록'은 변경 및 추가 내용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목록으로 동 목록에 없는 교육은 의료법에 의한 보수교육이 아닙니다.</p>
<p>○ 보수교육계획 목록에 나와 있는 교육은 아무 교육이나 그냥 참여하면 되나요?</p>	<p>○ 보수교육계획 목록에서는 교육일시, 교육주제, 주최기관, 개최장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회원여부 등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등록비용의 차이 및 참석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의 맨 우측에 나와있는 주최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참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
<p>○ 보수교육에 참석하였는데 점수확인 어떻게 하나요?</p>	<p>○ 이수하신 보수교육 점수 확인은 협회 홈페이지와 면허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협회 홈페이지의 경우 [로그인->치과의사회원전용->좌측 개인정보 중 회원/회무 전산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면허신고센터의 경우 면허신고 완료 이전에는 [면허신고->개인인증->정보입력->다음단계로 진행]의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 완료 후에는 우측상단의 [신고현황] 메뉴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모두 협회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p>
<p>○ 보수교육 점수가 입력되어 확인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p>	<p>○ 보수교육은 주최기관에서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중앙회)로 그 결과보고서를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회(중앙회)에서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결과보고서가 도착하면 점수 및 입력을 시행합니다. 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평균 업무일 3일 이내에 입력이 완료되며, 주최기관에서 협회 중앙회로 결과보고서를 발송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18일 정도 소요됩니다.</p>
<p>○ 보수교육에 참석한 다음에 점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있나요?</p>	<p>○ 협회(중앙회)에서는 모든 보수교육 기관이 보수교육에 대하여 RF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들으셨다면 RF카드를 통한 출결시스템에 태그를 하셨을 것이며 RF출결관리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보수교육 기관에서 협회(중앙회)로 결과보고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마다 부여된 점수에 따른 이수시간을 충족하여 출입 태그가 완료된 경우 결과보고서 접수 후 입력이 되므로 별도로 협회 중앙회로 제출하시거나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p>
<p>○ 보수교육 점수 확인을 했을 때 이수한 교육의 점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p>	<p>○ 점수 확인을 했을 때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는 대부분 보수교육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입력중인 경우, 그리고 드물지만 결과보고서에서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입니다. 위 질문에서 답변된 것처럼 점수입력이 완료되는 평균기일</p>

Question	Answer
<p>요?</p>	<p>은 18일 정도이므로 18일이 지난 후에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교육의 주최기관으로 연락하시어 보수교육결과보고서를 협회(중앙회)로 발송하였는지, 발송한 보수교육결과보고서의 출결결과데이터에 본인이 이수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보고서는 협회(중앙회)로 발송하였는데 출결결과데이터에 ①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협회(중앙회) 학술국으로 보수교육결과보고 누락자 공문을 보내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국에서는 누락자 공문이 접수되면 추가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②보수교육결과보고서의 출결결과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협회(중앙회) 학술국으로 문의하시어 전산입력 누락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시고 바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논문게재와 국제학회 참석에 대한 보수교육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 논문의 경우 연간 개인별 최대 4점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SCI/SCI(E)/학진등재지에 게재되었을 때,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4점, 공동저자는 2점, 기타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때,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2점, 공동저자는 1점이 발행년도 기준으로 개인별 최대 4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신청방법은 협회 학술국 이메일 주소(scientific@chol.com)로 출판된 논문의 pdf파일이 첨부된 신청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접수되며, 이메일 제목은 '논문게재 보수교육 인정자료 접수'으로, 내용으로 [면허번호, 성명, 게재된 학술지명, 학술지등급, 저자자격,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 후 일반적으로 업무일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p> <p>○ 국제학회 참석의 경우 연간 개인별 최대 2점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학회 주최측에서 발행한 [참석확인증(certification)] 또는 [명찰+초록집] 을 사진찍으셔서 사진 파일을 협회 학술국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접수됩니다. 이메일 제목은 '국제학회 참석 보수교육 인정자료 접수'로, 내용으로는 [면허번호, 성명, 참석한 국제학회명,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접수 후 업무일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p>
<p>○ 사이버보수교육은 없나요?</p>	<p>○ 협회 보수교육위원회에서는 사이버보수교육 시행의 계획 단계에 있으며 시행을 위해서 사이버보수교육이 연간 개인별 최대 2점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지침서에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2013년도 회기년도부터는 사이버보수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준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p>
<p>○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고, 면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①당해년도 면허취득자, ②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임상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③전공의] 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면허취득자와 전공의는 협회로 해당 명단이 입수되는대로 면제조치가 되고,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그리고 드물지만 명단에서 누락된 분과 전공의 2</p>

Question	Answer
	<p>차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근거자료와 함께 면제 신청을 하시면 검토 후 면제조치가 됩니다. 면제신청은 면허신고센터(license.kda.or.kr)에 접속 후 [면제/유예 신청] 코너에서 개인 인증한 다음에 근거자료를 파일화(스캔 또는 사진파일)하여 해당 항목에서 파일업로드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면제/유예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0일 이며, 접수 후 진행상황은 면허신고센터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신고현황'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p>
<p>○ 보수교육의 유예대상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p>	<p>○ 의료법 개정에 의하여 유예라는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유예는 다음해로 미룬다는 개념입니다. 유예대상은 '6개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은 자'로, 해당 년도에 유예를 받으면 당해년도의 보수교육이수 점수가 다음해로 미뤄지고, 다음해에도 유예를 받으면 2년치의 보수교육이수점수가 그 다음해로 미뤄지는 식으로, 매년 유예를 받다가 유예사유가 해소되면 즉, 진료를 재개하게 되면 그동안 유예받았던 점수를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5년간 진료하지 않아 매년 근거자료와 함께 연속적으로 유예를 받은 경우->8점*5년=40점 이수)</p> <p>○ 유예대상자인 '6개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근거자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확인하면 원하시는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하실 때에는 유예 해당 년도의 내역이 전체 다 나오도록 최소 해당년도 전년도부터 요청하는 당일까지의 내역이 모두 다 나오도록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인피부양자] 자격으로 6개월 이상 표시되면 유예조치가 가능합니다. 간혹 건보공단에서 해당 기간의 직장가입자 내역만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원에게 상기 내용을 설명하여 발급요청하면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여 재발급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적합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셨으면 면제신청과 마찬가지로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을 면허신고센터의 면제/유예 신청 코너에서 업로드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센터 우측 상단 '신고현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